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보상규정

(제정 2000. 3.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법령에 의거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제2조(정의) “종업원”이란 교직원, 계약직(촉탁), 조교,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교직원과 조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직(촉탁), 대학원생, 학부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종업원에 대한 건강 진단은 원자력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6.28>

②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 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 문서의 제출,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6.2.>

제10조(보고) 본교 종업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

3-1-30-2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보상규정

- ①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제 9조, 제10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